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63787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6267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8,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11행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을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으로 고친다.

○ 6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지체장애 3급인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요양을 위한 세대 분리는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정해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은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 자동차세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과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